

파주시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개정이유

-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 명칭 및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 파주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종전의 규칙을 전부 개정함

□ 주요내용

- 규칙의 제명 변경
 - (현행) 파주시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 (변경) 파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규칙의 목적 및 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 제2조)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안 제7조)
-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통합사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회의록 작성, 비밀준수, 출석발언, 수당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안 제13조)
- 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 개정규칙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 사전예고 결과: 예정

- 입법예고 기간: 2026. 6. 5. ~ 6. 25.(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예정

- 심의회 개최일: 2026. 7.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규칙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

파주시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파주시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회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파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파주시 청소년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2. 경기도 파주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장학관
3. 파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④ 위촉직 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시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

우

②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 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영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⑥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통합사례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10조(회의록)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누설금지) 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의 회의 및 통합사례회의에 참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출석·발언)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

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의 회의 및 통합사례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10조에 따라 위촉된 실행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소관 부서		청년청소년과 ☎940-4494
입안자	청년청소년과장	김 지 속
	청소년안전망팀장	김 상 진
	담 당 자	김 윤 진

□ 관계법령발췌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② 심의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3. 23.>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 3. 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3. 23.>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 3. 19., 2021. 9. 24.>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이하 “보호지원”이라 한다)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시·도 또는 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1. 9. 24.]

□ 기타 참고사항: 현행 규칙

파주시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시행 2024. 7. 1.] [경기도파주시규칙 제784호, 2024. 6. 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파주시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파주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위기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파주시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선도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안전망 운영 점검 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 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

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파주시의 청소년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다.<개정 2024. 6. 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당연직 위원

가. 파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나. 경기도 파주교육지원청 생활지도 업무 담당 장학관

다. 파주시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및 학교지원단 단장

2. 시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 위원.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또는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부재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운영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운영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 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직무태만, 품의손상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운영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운영위원회에 심의·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기관의 협조 등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행위원회를 둔다.

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실행위원은 운영위원회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과소대표되지 않도록 노력한

다.

④ 실행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그 밖의 실행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비밀 준수 의무) 운영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그 직에 있던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보호대상 청소년의 개인정보사 생활실태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2조(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3조(회의록) ①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존한다.

제14조(수당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과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수당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6. 28. 규칙 제784호)(과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과주시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

④ ~ ⑥ <생략>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6A경기파주024			
정책명	파주시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청년청소년과		
	담당자명	김윤진	전화번호	091-940-449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6년 5월 2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청년청소년과)	- 규칙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규칙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파주시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6년 05월 22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91-940-3684) 청년청소년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6-24		
자치법규명	파주시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윤수진
주관부서	청년청소년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복지8급 김윤진
평가결과 동지일	2026. 5. 27.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	-	-	

□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규제영향분석심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전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청년청소년과
	담당	팀장 김상진 담당자 김윤진
3. 관련법령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 	
4. 주요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칙의 제명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파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규칙의 목적 및 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안 제7조) ○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통합사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회의록 작성, 비밀준수, 훈석발언,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안 제13조) ○ 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5. 심사의견	<p>○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p> <p>- 「파주시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전부개정은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고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를 원활히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p> <p>-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p>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홍계팀 권성원(4171)	